



[2015.12.23.] [26713 , 2015.12.15.,]

() 02 - 2110 - 2833

() 02 - 2110 - 3167

1 () 「 」

[2012.8.31.]

2 () 「 」 (" ") 13

1. . .

2. 가

3. 가

4. . 가

13 4

1. .

2.

3.

[2012.8.31.]

2 2(.) 18 1

1. 가

2.

3.

4.

5.

18 1

() ()

.< 2013.3.23.>

1. 1

2.

3.

2

1

.< 2013.3.23.>

18 2

1

[2012.8.31.]

2 3() 18 2 1 2

[2012.8.31.]

2 4() 18 5 1 3 " "

- 1.
- 2.
- 3.
- 4.

(" ") 10 .

[2012.8.31.]

2 5() , 18 5 2 (" ") . <

2015.12.15.>

18 5 2

- 1.
- 2.
- 3.
- 4.
- 5.
- 6.

18 5 2

2 3

[2012.8.31.]

3 () 20 1 (" ") (" ") .

- 1.
- 2.
- 3.
- 4.

[2012.8.31.]

4 () 20 2

20 3

1

< 2013.3.23.>

[2012.8.31.]

5 <2010.4.20.>

6 <2010.4.20.>

7 <2009.8.18.>

8 <2009.8.18.>

9 <2010.4.20.>

10 <2010.4.20.>

11 () 24 2
· ,
· < 2013.3.23., 2015.12.15.>
[2012.8.31.]

12 () 26 3

- 1.
- 2.
- 3.
- 4.

[2012.8.31.]

13 () 27

- 1. 「 · 」 · 「 」
- 2. 가 가 「 」
- 3. 가 가
- 4.
- 5. 1 4 「 」
가 50

[2012.8.31.]

14 (·) 28

· < 2013.3.23.>

1

< 2013.3.23.>

[2012.8.31.]

15 () 30 2 (" ")

- 1. 가 ,
- 2.
- 3. · · ·

.< 2013.3.23.>

2

1

.<

2013.3.23.>

.<

2013.3.23.>

4

2

.< 2013.3.23.>

[2012.8.31.]

15 2(가) 31 2 2 " 가 가
" 「 」 2 2 [가 「 」 1 2
2 (書信)] .

[2012.8.31.]

[15 2 15 3 <2012.8.31.>]

15 3() 31 2 3 ()
() ()

.< 2013.3.23.>

1. 15 5 1 가

2.

3. 15 4

4. (15 4 1 3)

1

「 」 36 1

.< 2013.3.23.>

1

15 4 1

.< 2013.3.23.>

3

가

.< 2013.3.23.>

.< 2013.3.23.>

[2012.8.31.]

[15 2 , 15 3 15 4 <2012.8.31.>]

15 4() 31 2 4

.< 2013.3.23.>

1. . : . (" ")

12

가.

가

.가

2

2. : 80 (20 , 「
」 2 2

80)

3. :

가.

1 3

.<

[2013.3.23.>](#)

[[2012.8.31.](#)]

[15 3 , 15 4 15 5 <[2012.8.31.>](#)]

15 5() 31 3 1 " "

15 4 1 3

31 3 1

가

1.

2.

3.

[[2012.8.31.](#)]

[15 4 , 15 5 15 6 <[2012.8.31.>](#)]

15 6() 31 5 1

.< [2013.3.23.>](#)

[[2012.8.31.](#)]

[15 5 , 15 6 15 7 <[2012.8.31.>](#)]

15 7() 31 5 3 3 .

[[2012.8.31.](#)]

[15 6 , 15 7 15 8 <[2012.8.31.>](#)]

15 8() 31 5 2

.<

[2013.3.23.>](#)

1

20

가

7

.< [2013.3.23.>](#)

2

2

.< [2013.3.23.>](#)

[[2012.8.31.](#)]

[15 7 , 15 8 15 9 <[2012.8.31.>](#)]

15 9() 31 7 2

「 2 3
31 7 2

(鐵印)

1 2

1 2

1. ()

2. ()

3.

4.

5.

6.

7.

3

1.

2.

3.

[2012.8.31.]

[15 8 , 15 9 15 10 <2012.8.31.>]

15 10() 31 9 3

1.

2.

3.

4.

[2012.8.31.]

[15 9 , 15 10 15 12 <2012.8.31.>]

15 11() 31 9 5

1.

4 1

2.

[2012.8.31.]

[15 11 15 13 <2012.8.31.>]

15 12() 31 11 1

2013.3.23.>

1.

2.

1

1. 31 12

2. 31 13

3. 15 4

4. 15 10

5.

[2012.8.31.]

[15 10 <2012.8.31.>]

15 13(가) 31 16 2 1

20 가 , 가

. < 2013.3.23.>

1 10 ,

10 가 1 10 .

1 가

가 , 가 .<

2013.3.23.>

[2012.8.31.]

[15 11 <2012.8.31.>]

15 14() 31 18 2 " 가 "

「 」 2 2 (가 「 」 1 2 2

) .

31 18 3 .< 2013.3.23.>

1. . :

5

가. . 가

. 가 2

2. :

가. .

. .

. .

. .

3. : 20 (10 , 「

」 2 2

20)

2 2 .<

2013.3.23.>

[2012.8.31.]

15 15() 31 18 3
() . < 2013.3.23.>

1. 가

2.

3. 31 18 3

4. (15 14 2 2)

1 「 」 36 1

.< 2013.3.23.>

1 31 18 3

.< 2013.3.23.>

3

가

.< 2013.3.23.>

[2012.8.31.]

16 () 32 (" ") (" ")

[2012.8.31.]

17 <2012.8.31.>

18 <2012.8.31.>

19 () 5 가

(開議)

(33 2)

가

1 4

[2012.8.31.]

20 () 가

1

2 가 1

3 34 2

7

4

[2012.8.31.]

21 () 37 1 가

1 가

[2012.8.31.]

22 () 2

. < 2013.3.23.>

2

. < 2013.3.23.>

[2012.8.31.]

22 2() 39 . <

2013.3.23.>

- 1. 18
- 2. 23 3
- 3. 31 10 1 2
- 4. 31 21 1 2
- 5. 15 13 1 3 가

[2012.8.31.]

22 3() 가 「

」 19 1 가

1. 34 2 20 5

2. 35 1 2

[2014.8.6.]

[22 3 22 4 <2014.8.6.>]

22 4() 3

(3)

1. 15 4 : 2014 1 1

2. 15 14 : 2014 1 1

[2013.12.30.]

[22 3 <2014.8.6.>]

23 () 46 1 2 4

[2012.8.31.]

< 17655 ,2002.6.29.>

() 2002 7 1 .
()
22 2002 8 31
()

< 19118 ,2005.11.4.>

()
()

9

()
18 5 1 4 " 23 " " r
」 9 "

< 20120 ,2007.6.28.>

2007 7 4 .

< 20388 ,2007.11.16.>

1 () 2007 11 18 .
2 (가) 31 2
1 15 11 가 , 가

3 ()
117 7 " 2 " " 2 1 "

30 2 " 2 " " 2 1 "

< 20678 ,2008.2.29.>

1 () . < >
2 6
7 () <66>
<67>
5 4 " " " "

4 2 , 7 1 · 2 , 8 2 , 10 2 · 5 , 11 , 14 1 ,
 15 2 · 3 · 4 · 5 · 6 · 7 , 15 2 1 · 3 · 4 ·
 5 , 15 3 1 1 가 · 2 , 15 5, 15 6 2 , 15 7 1 ·
 2 · 4 , 15 10 1 , 15 11 1 · 3 , 22 1 · 2 , 23
 1 · 2 · 3 · 4 " " " .
 14 2 , 15 2 · 3 , 15 5, 23 5 " " " "
 .
 8 4 .
 <68> <86>

< 21214 ,2008.12.31.>

1 () . < >
 2 4
 5 () <125>
 <126>

[]
 (15 6 1)

1. 31 2 1 31 5 1 3 5
 1
 1

2. 31 2 4 31 4 1 5
 31 5 1 4

31 4

가 31 5 1 4

.

가

31 4

9. 31 16 2 31 4 9 2

가 31 4 31 5 1 4

<127> <175>

< 21692 ,2009.8.18.>

1 () 2009 8 23

2 4

5 () <19>

<20>

7 8

<21> <28>

6

< 22129 ,2010.4.20.>

1 ()

2 ()

< 22151 ,2010.5.4.>

1 () 2010 5 5

2 3

4 () <142>

<143>

15 2 2 " 「 」 21 1 " " 「 」 36 1 " .

<144> <192>

< 24076 ,2012.8.31.>

1 () 2012 9 2 . , 3 16 2013 1 1 .

2 () 4

3 ()

51 2 " 「 」 " " 「 」 " .

3 3 " 「 」 " " 「 」 " .

5 3 " 「 」 " " 「 」 " .

8 6 " 「 」 " " 「 」 " .

62 1 " 「 」 " " 「 」 " .

가가

53 2 4 1 2 " 「 」 " " 「 」 " .

3 1 " 「 」 " " 「 」 " .

216 3 6 2 " 「 」 " " 「 」 " .

35 1 " 「 」 " " 「 」 " .

30 1 1 33 1 1 " 「 」 " " 「 」 " .

12 4 " 「 」 " " 「 」 " .

66 8 2 " 「 」 " " 「 」 " .
 30 2 " 「 」 " " 「 」 " .
 49 1 " 「 」 " " 「 」 " .
 36 " 「 」 " " 「 」 " .
 <16> 23325 .
 22 1 " 「 」 " " 「 」 " .
 4 () 「 」 .
 가

< 24442 ,2013.3.23.>

1 () . < >
 2 11
 12 () <70>
 <71>
 2 2 2 , 3 , 14 2 , 15 2 , 3 , 15 6,
 15 15 1 3 " " " " .
 2 2 2 , 3 , 4 2 , 11 , 14 1 , 15 2 ,
 3 5 , 15 3 1 , 2 5 , 15 4 1 1
 가 . , 2 , 15 6, 15 8 1 , 2 , 4 , 15 12 1
 , 15 13 1 . 3 , 15 14 2 1 가 . , 3 , 15 15 1
 , 2 4 , 22 1 . 2 , 22 2 , 4 1
 1) 5) 2 " " " "

2

<72> <92>

< 25050 ,2013.12.30.>

2014 1 1 . < >

< 25532 ,2014.8.6.>

2014 8 7 .

< 26713 ,2015.12.15.>

2015 12 23 .

[별표 1] <개정 2012.8.31>

인증 수수료 (제2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수수료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50만원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0만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5만원

[별표 2] <개정 2013.3.23>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표시 (제2조의3 관련)



[별표 3] <신설 2012.8.3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라목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휴업 등으로 인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3년간의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전자문서 보관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3년간 연평균 전자문서 보관량 [단위: 테라바이트(TB)]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만원)
1	20 이하	20
2	20 초과 ~ 50 이하	40
3	50 초과 ~ 80 이하	60
4	80 초과	80

[별표 4]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나. 법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다. 법 제18조의7을 위반하	법 제46조제1항제2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라.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3호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마. 법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4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바.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5호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사. 법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6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아. 법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7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자. 법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8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차. 법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카. 법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공개 등을 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9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타. 법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				

을 받지 않은 경우 파.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0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하.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1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거. 법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2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너. 법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3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더. 법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4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러. 법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5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머. 법 제31조의20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6호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버. 법 제31조의21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7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서.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	법 제46조제2항제18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9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저.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0호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